

2024년도 OK FTA 컨설팅

2024. 4.

사업주체: 대전상공회의소
(대전지역 FTA활용지원센터)

수행기관: 관세법인 더블유

1

지원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4년 OK FTA 컨설팅
- (사업기간) 2024년 4월 ~ 11월 30일
- (사업목적)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(또는 국내공급)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①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, ② FTA 활용 능력 제고, ③수출경쟁력 강화 달성
- (지원대상)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수출(예정)기업
- (지원분야)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
 -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,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

<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>

- A유형(종합컨설팅):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, 원산지 관리 매뉴얼 제공 및 업체·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, 원산지 모의사후검증,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추가 지원
- B,C유형(기초컨설팅):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등 발급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, 원산지모의사후검증,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추가지원

- (지원금액) A유형 300~500만원 B,C유형 100~250만원

*총지원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규모(매출액 기준)에 따라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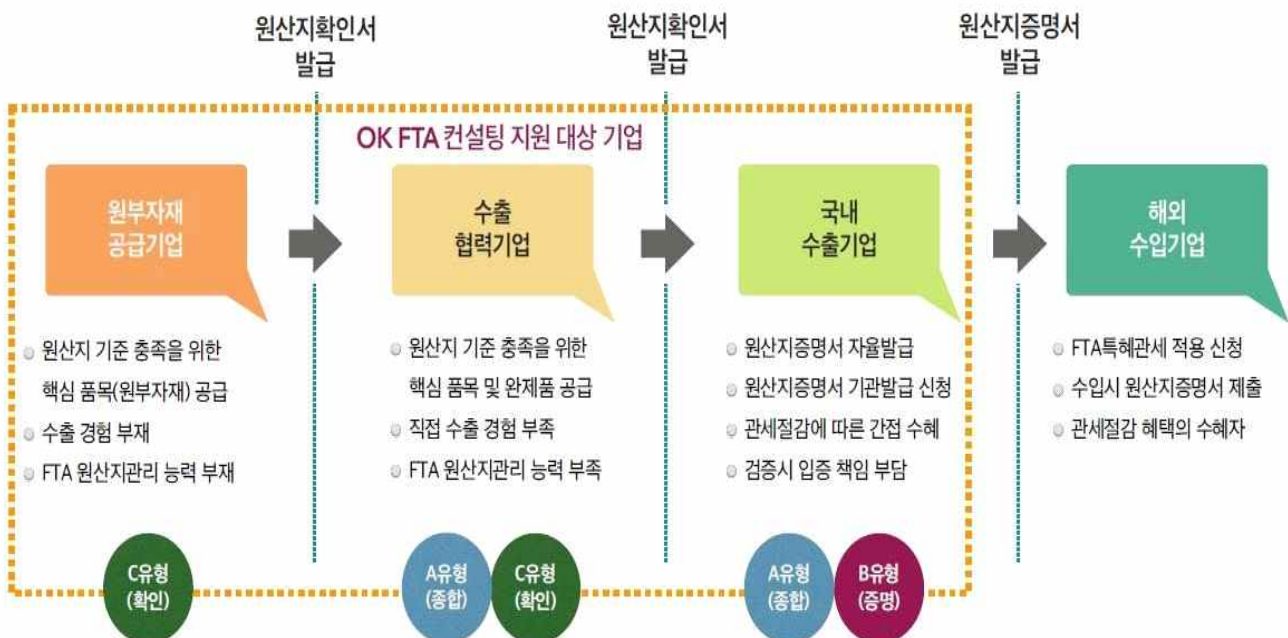
< 기업분담금 비율 >

전년도 매출 50억 이하	무료
전년도 매출 50억~100억 미만	(총지원금액-200만원)의 10%
전년도 매출 100억~500억 미만	(총지원금액-200만원)의 20%
전년도 매출 500억~1,000억 미만	(총지원금액-200만원)의 30%
전년도 매출 1,000억~1,500억 미만	(총지원금액-200만원)의 40%
전년도 매출 1,500억 이상	(총지원금액-200만원)의 50%

□ FTA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별 지원

- (지원 대상) FTA활용목적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출협력기업, 원부자재 공급 기업으로 세분화된 컨설팅으로 FTA활용 능력을 제고
- (국내 수출기업 지원) 최종 조립, 완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 해외 수입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품목·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, 원산지사후 검증 대비 필요
- (수출협력 기업) 완제품·부분품·핵심부품 제조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,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필요
- (원부자재 공급기업) 원자재·부자재 등 비교적 단순한 품목이나, 원산지판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 필요

<OK FTA컨설팅 지원 대상>



□ **종합 컨설팅(유형 A, 최대 500만원 지원)**

- 기업의 자체 FTA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필수 컨설팅과 기업선택형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
 - 필수컨설팅을 통하여 품목분류, 원산지판정, 원산지증명(확인)서 발급 준비 등 전문 컨설팅과 기업의 원산지관리자 교육을 병행
 - 선택형 컨설팅으로 추가 품목 지원, 인증수출자(업체·품목) 취득,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등을 제공

□ **기초 컨설팅(유형 B·C, 최대 250만원 지원)**

- 원산지증명(확인)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기초 컨설팅 제공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원
 - 필수컨설팅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및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
 - 선택형 컨설팅으로 추가 품목 지원, 인증수출자(업체·품목) 취득,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등을 제공

□ 원산지증명서

제조/생산하는 제품 직접수출시 한국산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
해당 수입국: 관세혜택, 가격경쟁력향상, 대외 이미지 향상 효과

□ 원산지확인서

제조/생산하는 제품 간접수출시 한국산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서 발급
해당 수입국: 관세혜택, 가격경쟁력향상, 대외 이미지 향상 효과

□ 원산지인증수출자 개념 및 혜택

<원산지 인증 수출자란?>

- 세관에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
-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: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 혜택
-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: 해당 협정, 해당 품목에 대해 혜택
- 인증 후 유효기간 5년이면 연장 가능

<원산지 인증 수출자 혜택>

-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
-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기한 단축
- 대외 이미지 향상 및 가격경쟁력 증가
-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시 가산점수 획득
- 한-EU FTA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필수 등